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203호 2021. 2. 26.(금)

【고 시】

○ 옥천군 고시 제2021-22호 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계획 고시 ..1
○ 옥천군 고시 제2021-25호 2021년 옥천군 양수-평산적하-대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자 선정 고시 3
○ 옥천군 고시 제2021-2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4

【공 고】

○ 옥천군 공고 제2021-251호 옥천군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 공고 5
○ 옥천군 공고 제2021-258호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8
○ 옥천군 공고 제2021-263호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6
○ 옥천군 공고 제2021-264호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5

【기 타】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9호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36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고시 제 2021-22호

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계획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농어촌정비법」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26.

옥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 업 비: 2,120백만원(국비 1,538, 지방비 481, 자부담 101)
4. 주요사업 내용
   가. 위 치: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일원
   다. 세부사업내용
      1) 생활·위생·안전 기반시설 정비: 상·하수도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공동작업장 조성, 배수로 정비, 토사유출 방지 옹벽 조성, 재래식 화장실 정비,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2) 주택 정비계획: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시설물 정비, 담장 정비 등
      3)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약달력 보급과 건강강좌, 마을 경관관리사, 개심리 한마당, 개심리 마을학교 등
5. 사업시행자: 옥천군수
6. 사업예정기간: 2019년~2022년(4년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사용 등의 명세서: 게재생략
8. 기 타: 사업계획 및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730-3293)에 비치된 사업계획서 열람 가능

[별첨]

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투자계획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시행계획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 계				2,120.0
노후 주택정비	소 계			423.1
	■ 빈집정비		13호	127.6
	■ 슬레이트지붕철거		21호	환경부예산
	■ 슬레이트지붕개량		21호	215.4
	■ 집수리		7호	80.1
안전·위생 확보	소 계			383.0
	■ 배수로정비		98.0m	16.4
	■ 토사유출방지옹벽		274.3m	176.3
	■ 재래식화장실정비		7개소	96.2
	■ 가로등 및 CCTV		8개소/7개소	94.1
기초생활인프라	소 계			317.6
	■ 상·하수도정비		4,330.0m	317.6
	■ 교량정비		-	-
주민공동시설	소 계			538.6
	■ 마을회관 리모델링	리모델링	-	-
		신축	152.55㎡	382.7
	■ 마을공동작업장	리모델링	-	-
		신축	220.0㎡	155.9
경관 시설 정비	소 계			136.3
	■ 시설물정비		12개소	1.4
	■ 담장정비		331.0m	134.9
휴먼케어	소 계			74.0
	■ 약달력보급과건강강좌		24회	24.0
	■ 마을경관관리사		4회	20.0
	■ 개심리한마당		3회	30.0
주민역량강화	소 계			30.0
	■ 개심리마을학교		2회	20.0
	■ 현장견학		2회	10.0
제경비	소 계			217.4
	■ 기본조사비		1식	83.1
	■ 세부설계비		1식	-
	■ 공사감리비		1식	-
	■ 사업관리비		1식	-
	■ 석면조사비		-	-
	■ 폐기물처리비		1식	119.3
	■ 준공백서 제작		1식	15.0
연계사업비	소 계			124.3
	■ 환경부 슬레이트		1식	124.3

옥천군 고시 제 2021 - 25호

2021년 옥천군 양수·평산적하·대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자 선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수·평산적하·대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옥 천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2. 사업지구 명칭 : 양수·평산적하·대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3. 사업위치 및 면적 : 총2,310여필지/1,595,849㎡
   -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3번지 일원
   -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975-2번지 일원
   -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일원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옥천군고시 제2021-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옥 천 군 수

시행자	상호및명칭	옥천군청(산림녹지과)
	대 표 자	-
	주 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하천의종류 및 하천명		지방하천[보청천]
점용개요	위 치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산40-2, 인정리 39-4
	점용면적	1,720㎡ (영구점용 0.0㎡, 일시점용: 1,720㎡)
	점용기간	2021. 3. 1. ~ 2021. 6. 1. / 2021. 10. 17. ~ 2021. 11. 15.
	목적및사유	2021년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진화헬기 상시 운용을 위한 계류장 설치
문의처 :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 (043) 730-3525		

옥천군 공고 제2021-251호

옥천군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 공고

옥천군 금고약정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기 군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 월 26 일

옥 천 군 수

1. **금고지정** : 단일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약정기간** : 4년 (2022. 1. 1. ~ 2025. 12. 31.)

3. **지정방법** : 공개경쟁방법

4. **신청자격**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 규정에 따른 옥천군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5.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출납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군에서 금고업무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등

6. 신청 절차

○ 관련서류 열람

- 기　　간 : 2021. 3. 10(1일간), 09:00~18:00
- 열람자료
  · '19 세입세출결산서 및 '21 세입세출예산서
  ·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1. 3. 22.(1일간), 09:00~18:00
- 장　　소 : 옥천군청 재무과
- 제출부수 : 11부(원본 1, 사본 10)
- 제출내용 : 평가항목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근거자료 등
- 작성요령 : 제안안내서의 소정양식 및 작성요령 참조
- 기타사항
  ▪ 제시된 항목 이외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은 첨부할 수 없음 → 첨부내용 평가 미반영
  ▪ 제출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7. 평가방법 및 금고지정

○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에 의거 옥천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심사 평가

○ 평가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옥천군 금고로 지정

※ 필요시 청문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시 해당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해기관이 책임을 짐.

8. 문의 : 옥천군 재무과 (☎ 043-730-3211)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조항의 금융기관의 경우 순자본비율)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율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8)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지방세입금처리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옥천군 공고 제2021-258호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 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10조)

○ 분과위원회(안 제11조)

○ 조사・연구의 의뢰 등(안 제12조)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5. 의견제출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725,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옥천군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건립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4.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5. 유물의 제작・보존・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전시 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7.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박물관 관련업무 담당 국장·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나.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라. 지역문화예술, 향토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연구하여 줄 것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옥천군립박물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21-263호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조례명 변경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2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5조 ~ 10조)

○ 여성폭력 예방교육 (안 제13조)

○ 사업비의 지원 (안 제15조)

4. 개정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의견제출

○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25,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옥천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2.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

2.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례관리팀의 구성) ① 위원회는 여성폭력 사례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은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지원 업무 담당 주사가 운영하며,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이 추

천하는 실무전문가를 구성원으로 둔다.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옥천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21-264호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11조)

4. 제정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기술지원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4962, FAX : 043) 733-7848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별표 1 항목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에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실의 관리책임자로서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과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

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을 의뢰하는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을 의뢰하는 시료의 접수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분석 업무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목적 이외에 증거 또는 확인 자료, 피해 보상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을 의뢰한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

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 대상 시료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의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료별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이를 활용할 경우 의뢰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 징수절차는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옥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옥천군에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단체 등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

3.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옥천군에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분석을 완료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 석 항 목 (제2조 관련)

분 석 항 목 명	분 석 성 분
○ 농약 잔류량	○ 농작물별로 분석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 관련)

순 서	처 리 내 용
1. 의뢰서 접수(수시)	○ 시료 확인 및 분석용도 상담
2. 분석시료 정리	○ 접수번호 부여 및 시료 전처리
3. 분석실시	○ 분석항목별 성분분석 (접수 후 5일 이내)
4. 결과통지서 작성	○ 분석결과 확인 후 결과통지서 내부결재
5. 의뢰인 통지	○ 분석결과 통지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분 석 의 뢰 서 (제4조 관련)

□ 의뢰인(신청인)

성 명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핸드폰 : 전 화 :	팩 스 : E-Mail :	
결과통지서 발송	우편( ) FAX( ) E-mail( ) 기타( )		

□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연 번	의뢰 시료				검사용도 (로컬푸드, 참고용 등)	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품 목	채취 주소(생산지)	채취일자	생산자명 (채취자)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옥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u>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u> :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잔류농약 분석결과통지서 (제7조 관련)

발급번호 :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자	성 명 (대표자 성명)			
	생 산 지 (재배필지)			
접수일자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				

분석 결과	검출성분	검출치(mg/kg)	허용기준(mg/kg)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9호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제3조)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안 제5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안 제6조)

○ 홍보활동(안 제7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2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옥천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다만, 신규 등록되는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2.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홍보활동)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